

포항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24호

2009. 4. 14(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항시

○시장지시사항..... 2

◀ 조 례 ▶

-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제924호) 7
-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제925호) 12
-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26호)..... 31
- 포항시읍·면·동 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제927호) 33
-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제928호) 36
-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29호) 39
-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930호) 41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31호) 46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제932호) 59

◀ 공 고 ▶

- 공 인 공 고(제2009-535호) 78
- 第154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시의회공고 제3호) 80
- 실 시 계 획 승 인 공 고(국방부공고 제2009-10호) 81

회									
람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4.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함을 만들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 순찰을 실시토록 하고, - 일자리 창출과 연계 관리자 선정을 통하여 시설물이 청결히 관리되도록 조치 강구하기 바람. ○ 산불예방 관련 임시반상회 시민홍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예방 임시반상회와 관련 리,통장 회의개최와 반장교육을 통해 반상회보 배부를 철저히 하여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가로등은 구간별 통일성을 기하도록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설치된 가로등이 장소마다 표준모형을 달리하여 각양각색 모형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보기에 좋지 않은데, - 구간별로 모양을 통일하여 설치하도록 하기 바람. ○ 자전거도로 개설은 T/F팀에서 총괄하여 관리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별 계획된 자전거도로 개설은 T/F팀으로 계획을 통보하여 T/F팀에서 일괄 관리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가로등, 도로표지판, 신호등 등의 통합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된 가로등, 도로표지판, 신호등 등을 한꺼번에 한 폴대에 모아 설치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p>전 부 서 (남.북구청)</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 (도시녹지과)</p> <p>전 부 서 (건 설 과) (남.북구청) (건설환경사업소)</p> <p>전 부 서 (건 설 과)</p> <p>전 부 서 (건 설 과)</p>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소복을 착용하고, 간부들은 현장을 자주 나가 현장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 기 지시한 실국별 소관 단체와의 미팅, 간담회(식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p>전 부 서</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09-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홍보물(스피치메뉴)을 제작 활용토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 중심도시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지금의 포항모습을 직원은 물론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 임. - 현 포항의 모습을 잘 알릴 수 있는 간단명료한 스피치 홍보안을 만들어 반복적 활용 및 사용으로 시민들이 홍보내용을 각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p>기획예산과</p>
'09-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과 관련된 노래를 수집하여 발표회 개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과 관련한 노래(영일만 뱃사공, 아! 포항아, 영일만 처녀 등)가 많이 잔존하는데 수집하기 바람, -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의 합창단들이 발표회를 갖는 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p>문화관광과</p>
'09-0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권 금융기관을 활용한 죽도시장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안 최대 재래시장인 죽도시장과 지역 음식점을 인근 대구지역에 홍보가 절실함. - 대구시내 대구은행, 농협 각 지점에 홍보전단 또는 홍보지를 비치하고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 바람. 	<p>경제통상과 (환경위생과)</p>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에서 형산강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바람. - 형산강은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 의미를 지니고 당시 절대사수가 필요했던 워커(당시 한미사령관)라 인 이었음 -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는 기념비를 6.25일 이전에 세워 학생들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09-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도의용군이 부르던 노래비 설치 - 포항지역 전투에 참가한 학도의용군이 불렀던 노래를 조사하여 8.11일까지 노래비를 설치 추모토록 하고, - 충혼탑 주변을 잘 정비 및 단장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09-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룡포수협 위판장 인근지역 정비 철저 - 구룡포수협 위판장 인근에 설치된 기사대기용 컨테이너 등을 정비하여 일대를 깨끗이 관리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남 구 청)
'09-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 앞(형산로) 인도 블럭교체 - 사각형의 오래된 구형블럭은 새로운 인터럭킹으로 교체하기 바람, - 보도가 좁은 가로수 식재지역은 잔디블럭을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에 맞추어 설치되도록 하기 바람. 	건 설 과 (남 구 청)
'09-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로 산불예방 감시인력 배치를 검토 추진 -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 	도시녹지과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락별로 코드를 부여, 지역실정에 밝은 감시원 1명씩을 선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자주 실시하여 산불경각심을 고취하기 바람. <p>○ 가로수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가 식재된 인근주변을 개방하여 나무 뿌리가 잘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전 시가지에 식재된 가로수를 일제 조사하여 발육 불량 수목에 대하여 개선조치 바람. 	도시녹지과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24 호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의거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 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특화항로”란 영일만항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말한다.
5. “1차년도 화물”이란 최초지원대상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6. “2차년도 화물”이란 1차년도 다음날부터 1년간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7. “순증화물”이란 최근 2년내에 처리한 화물의 평균 실적대비 순수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단, 2차년도 순증화물은 1차년도 화물 실적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기타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②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다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 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에 따른 정기적인 항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3.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

제4조(지원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

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3년내로 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특화항로 개설운영에 따른 운항손실보조는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 대하여 유류비, 용선료 등에 대해 지원하되, 연간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2년 내로 한다.
3.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은 화물에 대해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1차년도는 100퍼센트, 2차년도 부터는 순증 화물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화물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지원하고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 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시는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시책추진) 시장은 영일만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원기준(제4조 관련)

1. 항로연장지원금 1TEU당 지원금액

가. 항차당 100TEU미만 적취시 (적취 보조)

- 1TEU당 지원금액 = (추가해상운임+항만시설사용료+하역비) × 50%

※ 지원 물량 = 100TEU - 적재 물량

나. 항차당 100TEU이상 적취시 (하역비 보조)

- 1TEU당 지원금액 = 하역비 × 50%

※ 지원 물량 = 적재 물량

2. 이용장려금 1TEU당 지원금액

구 분	유치물량(6개월간)	지원금액 (원/TEU)
이용장려금	199 TEU 이하	30,000
	200~499 TEU	33,000
	500~1,499 TEU	35,000
	1,500~2,999 TEU	38,000
	3,000 TEU이상	40,000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25 호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주민투표조례” 를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중 “20세 이상의” 를 “19세 이상의” 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주소·주민등록번호” 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주민등록번호”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2조(시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20세 이상</u>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u>의 ----- ----- ----- ----- -----</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u>주민등록번호·주소</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u>주소·주민등록번호</u>, 청구의 대</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 ----- ----- <u>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u></p>

현 행	개 정 안
<p>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u>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 략)</p>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th>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5%;">청구인 대표자</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20%;">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 :)</td> </tr> <tr> <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이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 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포 함 시 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포 함 시 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th>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5%;">청구인 대표자</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20%;">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 :)</td> </tr> <tr> <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이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 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포 함 시 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포 함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포 함 시 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포 함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2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청구인 대표자 증명서</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td> </tr> <tr> <td>주민투표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서명요청기간</td> <td colspan="3">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div>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별지 제2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청구인 대표자 증명서</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td> </tr> <tr> <td>주민투표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서명요청기간</td> <td colspan="3">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div>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청구요지					주민투표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 귀하</p>					<p>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 귀하</p>				
<p>※ <u>참고</u>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p>※ <u>작성요령</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 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청구인대표 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명	(생 또는 별명)	주민등 록번호		수 임 자	성명	(생 또는 별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 또는 별명)	주민등 록번호			수 임 자	성명	(생 또는 별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 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 (인)</p>					<p>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 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 (인)</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 지 및 이유 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 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 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 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7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이의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주소 (전화번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 상</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취지</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사유</td> <td colspan="4"></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div>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별지 제7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이의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주소 (전화번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 상</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취지</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사유</td> <td colspan="4"></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u>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u> 2. <u>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u> 3. <u>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u> 4. <u>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u></p> </div>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26 호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 13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시장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 15조제1항의 ----- ----- ----- ----- -----</p>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27 호

포항시읍·면·동 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를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다만, 인구 2천명 이상인 행정리의 경우에는 신축시 건축 연면적 150제곱미터까지” 를 “다만, 150가구를 초과하는 행정리의 경우에는 신축시 150제곱미터까지” 로 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신광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번지
장기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10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90-6번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6-4번지
청하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4-1번지
대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96-4번지
용흥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용흥동 336-7번지
연일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44-1, 5번지
제철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45번지
기북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271-6번지
송라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189-43번지
대송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630-3번지
홍해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내리 1-4번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명:포항시읍·면·동 복지회관등 설치 운영조례</p> <p>제11조(시설용도) ①-③ (생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관의 설치 규모는 건축연면적 100㎡이하로 한다.</p> <p><u>다만, 인구 2천명 이상인 행정리의 경우 에는 신축시 건축연면적 150제곱미터 까지 설치할 수 있다.</u></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80%;">위 치</th> </tr> </thead> <tbody> <tr><td>신광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번지</td></tr> <tr><td>장기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10번지</td></tr> <tr><td>죽장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4-4번지</td></tr> <tr><td>청하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4-1번지</td></tr> <tr><td>대보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96-4번지</td></tr> <tr><td>동해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91번지</td></tr> <tr><td>용흥동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용흥동 336-7번지</td></tr> <tr><td>죽장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90-6번지</td></tr> <tr><td>기계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49-1번지</td></tr> <tr><td>연일읍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44-1, 5번지</td></tr> <tr><td>제철동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45번지</td></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신광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번지	장기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10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4-4번지	청하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4-1번지	대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96-4번지	동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91번지	용흥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용흥동 336-7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90-6번지	기계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49-1번지	연일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44-1, 5번지	제철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45번지	<p>제명: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p> <p>제11조(시설용도)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u>다만, 150가구를 초과하는 행정리의 경우에는 신축시 150제곱미터까지 -----</u></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80%;">위 치</th> </tr> </thead> <tbody> <tr><td>신광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번지</td></tr> <tr><td>장기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10번지</td></tr> <tr><td>죽장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90-6번지</td></tr> <tr><td>죽장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6-4번지</td></tr> <tr><td>청하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4-1번지</td></tr> <tr><td>대보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96-4번지</td></tr> <tr><td>용흥동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용흥동 336-7번지</td></tr> <tr><td>연일읍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44-1, 5번지</td></tr> <tr><td>제철동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45번지</td></tr> <tr><td>기북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271-6번지</td></tr> <tr><td>송라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189-43번지</td></tr> <tr><td>대송면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남구 대송면 계내리 630-3번지</td></tr> <tr><td>홍해읍민복지회관</td><td>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내리 1-4번지</td></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신광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번지	장기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10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90-6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6-4번지	청하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4-1번지	대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96-4번지	용흥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용흥동 336-7번지	연일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44-1, 5번지	제철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45번지	기북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271-6번지	송라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189-43번지	대송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송면 계내리 630-3번지	홍해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내리 1-4번지
명 칭	위 치																																																				
신광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번지																																																				
장기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10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4-4번지																																																				
청하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4-1번지																																																				
대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96-4번지																																																				
동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91번지																																																				
용흥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용흥동 336-7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90-6번지																																																				
기계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49-1번지																																																				
연일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44-1, 5번지																																																				
제철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45번지																																																				
명 칭	위 치																																																				
신광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번지																																																				
장기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10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90-6번지																																																				
죽장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6-4번지																																																				
청하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4-1번지																																																				
대보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96-4번지																																																				
용흥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용흥동 336-7번지																																																				
연일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44-1, 5번지																																																				
제철동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45번지																																																				
기북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271-6번지																																																				
송라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189-43번지																																																				
대송면민복지회관	포항시 남구 대송면 계내리 630-3번지																																																				
홍해읍민복지회관	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내리 1-4번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28 호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시민의 향토 문화의식을 양양하며 문화적 향상을 도모코자 민속박물관 (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박물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박물관장)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포항시 지방 공무원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관리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에 의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박물관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신정 연휴
2. 추석 연휴 및 설 연휴
3. 공휴일 다음날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8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음주 기타 박물관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게시사항) 박물관장은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개관 및 휴관 일시
4. 관람시간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29 호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포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 2.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3. 전적지 및 안보시설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30 호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6·25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6·25참전유공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2.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6·25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의 지급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6·25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제8호·제9호·제9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관련 보상금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6·25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시장은 매분기 지급시기 전에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31 호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

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2. “원상복구비” 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3. “급수차의 사용경비” 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4. “도로복구비” 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5. “도로결빙 방지비용” 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6. “출장경비” 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7. “지원경비” 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8. “홍보비” 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사업은 별표1과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 사업자의 공급 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이하 “누수 및 퇴수” 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도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 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포항시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공유일 및 야간작업은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하며, 기타 설계 등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 할 수 있다.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 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 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및 누수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와 과태료 등은 손괴자 부담금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

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손피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피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피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피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 (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이설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 에게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단위개발사업,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1. 대단위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사업

-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에 의한 개발사업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에 의한 개발사업
- 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마. 주택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 바. 기타 대규모사업 등

2. 주거시설

- 가.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항 해당 건축물)
- 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항 해당 건축물)

3. 숙박시설

- 가. 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5항 해당 건축물)

4. 교육연구시설

- 가.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0항 해당 건축물)

5. 의료시설

- 가.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9항 해당 건축물)

6. 판매시설

- 가.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7항 해당 건축물)

7. 기타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항 해당 건축물)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4항 해당 건축물)
- 다.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항 해당 건축물)
- 라. 종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6항 해당 건축물)
- 마. 운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8항 해당 건축물)
- 바.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항 해당 건축물)
- 사. 수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2항 해당 건축물)
- 아. 운동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항 해당 건축물)
- 자.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4항 해당 건축물)
- 차. 위락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6항 해당 건축물)
- 카.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7항 해당 건축물)
- 타.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8항 해당 건축물)
- 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9항 해당 건축물)
- 하.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0항 해당 건축물)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1항 해당 건축물)
- 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2항 해당 건축물)
- 더. 방송통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4항 해당 건축물)
- 려. 발전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5항 해당 건축물)
- 며. 묘지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6항 해당 건축물)
- 벼. 관광휴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7항 해당 건축물)
- 샤. 장례식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8항 해당 건축물)

【별표 2】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대상사업	산정기준
대단위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 거 시 설	세대수×2,78인×0.3m ³ /인·일×1.28
숙 박 시 설	건축연면적(m ²)×0.024m ³ /m ² ·일×1.28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m ²)×0.008m ³ /m ² ·일×1.28
의 료 시 설	건축연면적(m ²)×0.022m ³ /m ² ·일×1.28
판 매 시 설	건축연면적(m ²)×0.021m ³ /m ² ·일×1.28
기 타 시 설	건축연면적(m ²)×0.012m ³ /m ² ·일×1.28

註)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
 -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침투계수
 -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

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 (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3/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
C = 유량계수 ($Ca \times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2)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1 kg/cm^2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면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3)	A = 면적(m^2)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4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932 호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시설에 관한 공사비와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 5. “수도사용자 등” 이라 함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 을 말한다.
- 6. “중수도시설” 이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 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 7. “구경별 기본요금” 이란 수도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 8. “시설분담금” 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 9. “공업용수” 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 10. “호” 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지역은 포항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전용급수시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 2. 공용급수시설: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 3. 소화용급수시설: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 4. 임시용급수시설: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 하는 급수시설.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한다.
- 5. 보조급수시설 : 전용급수시설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시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시설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시설을 설비하는 공사

-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 3. 수선공사: 급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 하는 공사
-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시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별표1의 수수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 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위치) 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 경계로부터 2m이내 건물외부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원할시는 계량기 에서 2m이내에 기본 급수전을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담장에 인접하고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읍·면 지역에 기 시행한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1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 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 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 에 의한다. 다만,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급수공사금액이 정액시공비의 2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일 경우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당해연도 12월10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분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제15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전용급수시설
- 2. 시설공용급수설비
- 3. 급수관의 구경확대
- 4. 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7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의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급수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가구이상 가구분할 적용 대상가구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4.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 5. 한 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 6.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 7.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8. 기타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발생)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년)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6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7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요금과 원수공급계통을 달리 하는 전용공업용의 급수요금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m³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m³으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m³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m³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 3. 기타 인정 개량이 불가피 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인은 별표1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4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 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6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상수도 배관 및 부속 시설물 등의 손괴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이 급수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

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 되어 현장 방문 결과 수돗물에서 맛, 냄새, 색도, 탁도 등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표지)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이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이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0.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표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처분 금액의 10/100이내)
2.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일반인(건당 50,000원이내)

제45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가 훼손·망실 또는 동파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교체하며 이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당해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계량기 대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 2. 제43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3. 시장이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수 수 료

-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8,000원
- 2. 제9조제4항의 시공자재검사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8,000원
- 3. 제9조제4항의 준공검사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8,000원
- 4. 12조제2항의 급수공사대행업지정 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 5. 제31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4,000원
- 6.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8,000원

【별표 2】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금표

(단위 : m³, 원)

구경별 정액요금		사 용 요 금			
계량기 구경(mm)	전당 단가 (원/월)	업 종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동	읍·면
13	500	가정용	1 - 10	450	400
			11 - 20	540	490
			21 - 30	680	630
			31 이상	790	740
20	1,390				
25	2,260				
32	3,800	일반용	1 - 50	690	690
			51 - 100	980	980
			101 - 300	1,120	1,120
			301 - 500	1,220	1,220
			501 이상	1,270	1,270
40	6,760				
50	10,380				
75	25,260				
80	29,760				
100	42,690				
150	94,000	대중탕용	1 - 1000	710	610
			1001-1500	980	880
			1501-2000	1,040	940
			2001 이상	1,110	1,010
200	132,350				
250	189,070				
300	210,080				
		전 용 공 업 용	단일종량제	410	410

【별표 3】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 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전용가정용, 담배소매업, 부동산중개소, 연탄소매업, 지물포, 철물점, 대서소(일반 행정), 소매점(5평 미만), 문방구(5평 미만), 사무소(4인 이하), 도장방, 만화가게, 양곡소매업,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원호단체, 경로당, 그 외 주된 용도가 가사용인 것
일반용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대중수영장
전용 공업용	별도 설치한 급수관에 의한 급수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조치
	조례제43조 제1항제1호	조례제43조 제1항제2호	조례제43조 제1항제3호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급수 설비철거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무승인급수 공사(신설공사에 한한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5배(신설공사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단, 사후 승인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위 명령 불응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의 고의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명령 불응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무허가특수 가압시설설치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거 또는 허가 절차 이행명령 위 명령 불응자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정수처분중 인급수전의 무단개전		5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업종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업종 직권변경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징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1개의 행위가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사유에 모두해당 할 때에는 위에 정한 기간 중 그 벌이 중한 쪽을 적용한다.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4. 14

포항시공고 제2009-535호

공 인 공 고

- 1. 등록공인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09. 4. 14
- 2. 등록 및 폐기사유 : 공인 마모로 인한 개각 등
-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1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

붙임 1. 신조공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 항 시 남 구 보 건 소 장 인	한글 전서체 2Cm 정방형		공인마모로 개 각

붙임 2. 폐기공인

포 항 시 남 구 보 건 소 장 인	한글 전서체 2Cm 정방형		공인마모로 폐 기
재 적 용 부 포 항 시 북 구 청 장 인 발 급 용	한글 전서체 2Cm 정방형		동폐합 미사용 인 증 기 폐 기

地方自治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第154回 浦項市議會(臨時會)
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

浦項市議會議長 崔 榮 萬

2009년 4월 10일

포항시의회공고 제 3 호

第154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

日時 : 2009年 4月 20日(月曜日) 午前 11時 30分

場所 : 浦項市議會 本會議場

경상북도보에 제5311호(2009. 3. 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국방부 고시 제2009-10호) 내용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방 부 장 관

2009년 4월 일

국방부 공고 제2009-10호

실 시 계 획 승 인 공 고

- 1.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 3. 사업의 개요 : 제1해병사단 강하훈련장 이전사업
- 4. 시행기간 : 2009. 1. ~ 2010. 12.
-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 가. 사업시행청 : 포항시
 -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 054) 270-2114
- 6. 사업용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174-1번지 외 170필지 329,622㎡
(붙임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